##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95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정준호·임호선·서영교

이춘석 • 이기헌 • 진선미

이학영 · 염태영 · 박희승

유후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倂記)하도록 하여 한글을 보존하고 선양하는 사회 문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은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어를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임.

현행법은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m²) 이하 간판들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건물 4

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m²)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한글 표시 위반 정도로 기소를 위한 고발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법률 제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광고물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2, 제4조"를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을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3조의3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개 성 안 제3조의3(광고물의 표시기준) 제3 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 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 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 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	
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	
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u>제3</u>	<u>利</u> 3
<u> 조의2, 제4조</u> , 제4조의2, 제4조	조의2, 제3조의3, 제4조
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	
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	
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	
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 다.

- 1. ~ 5. (생략)
- ② ~ ⑨ (생 략)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
     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
     한 자

1의2. ~ 5. (생략)

② · ③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1.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3조
 의3을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